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단2497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의청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3,789,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 중 43,789,680원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 ·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2014. 9. 25. 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2020. 11. 18. C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등 참조, 더욱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운영하던 ‘D’의 홈페이지에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D’의 주요거래처로서 C에 대한 채권자인 E 주식회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C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43,345,571원을 E 주식회사 및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그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3,789,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채권 중 43,789,680원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인권

청 구 원 인

원고는 중소기업자의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업무 등을 시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1. 원고의 공제금대출(피보전 채권액)

원고는 2020. 10. 12.자에 소외 C (D 공동대표)에게 제3호 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 금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함)을 지급하였고, 이 후 소외 D 이 2020. 12. 24.자로 폐업하여 위 대출금 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동 채권에 대한 본안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02359 대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가 소외 C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잔액은 금43,789,680원 (원금 39,500,000원 + 지연손해금 4,181,580원(원금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2021. 11. 11까지 322일간 연12%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비용 금108,100원) 입니다. (갑제1호증)

【 피보전 채권액 】

(단위 : 원)

채무잔액 (A)	기간	지연일수	연체이자(12%) (B)	독촉절차비용 (C)	채권액 (D=A+B+C)
39,500,000	2020. 12. 25 ~ 2021. 11. 11	321	4,181,580	108,100	43,789,680

2. 소외 C 의 사해행위

가. 위와 같이 소외 C 는 'D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제금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던 중, 해당업체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 되어 폐업 등 공제금대출에 기한이익을 상실(2020. 12. 24.)하기에 이르렀고,

소외 C 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F G H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보다 불과 1개월여 전인 2020. 11. 18.자에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서, 집행실익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1. 18.자로 경매개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I [], J [] (중복))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금341,000,000원인 반면,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만도 금534,500,000원에 이르므로, 소외 C []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 하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채무초과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겠습니다.) (갑제2호증 및 3호증)

다. 한편, 원고는 2021. 6. 9.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피고는 동 근저당권의 설정보다 7여년전인 2014. 9. 25.경, 소외 C []에게 금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K []은 연대보증 하였으며, 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갑제4호증의 1, 2)

라.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C []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운영 중 이던 'D []'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보전조치 혹은 강제집행 할 것을 예견하고 특정지인의 채권만을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입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를 구성(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물상보증행위 역시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 20324판결)하는 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여러모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구성함이 명백합니다.

3. 피고의 악의

가.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소외 C의 자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무렵, 자신의 지인인 피고의 채권만을 우선변제 받게 해 줄 목적으로 행하여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나. ① '갑제4호증의1,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연락처(전화번호 1)는,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이 받아두었던 'D'의 담당부장인 L의 연락처(전화번호 1)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② 'D'의 공동대표자이자 소외 C의 배우자인 소외 K의 명함에 기재된 'D'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를 조회해 보면 상호명이 'M'로 변경될과 동시에 대표자가 '피고 B'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외 C와 피고는 단순한 사업상 거래관계를 넘어서는, 동업자 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임이 추정되는 바, 피고의 악의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갑제5호증 내지 6호증)

4.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채권자 평등원칙에 반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1. 6. 14.에 금440,001,000원에 매각(2021. 6. 21. 매각허가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가까운 시일내에 말소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갑제7호증)

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피하고,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 914041판결)

나아가, 채권자 취소권이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므로, (대법원 2010. 8. 9. 선고 2010다362096판결)

원고의 피보전 채권액인 금43,789,680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범위내에서 피고의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당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게 될 배당금채권액은 금143,345,571원입니다.) (갑제10호증)

5. 결론

따라서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명백한바, 채권의 공동담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 1 목 록

1.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N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O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광주시 F

지 목 : 대

면 적 : 1644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P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1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6444.7분의 59.707

〈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표시 〉

순위번호 4

접 수 2020년 11월 18일 제91887호

원 인 2020년 11월 18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 무 자 C, K

근저당권자 B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관할

제 2 목 록

